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서욱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직자의 배우자도 병역사항을 신고 및 공개하도록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94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신고 및 공개 대상 배우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대상 배우자 범위 명확화.(안 제2조의2 신설)
공직자의 배우자(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병역사항을 신고 및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배우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신고대상 배우자) 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의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병역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쳤거나(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및 의무복무를 마치지 않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사람을 포함한다) 복무 중인 사람
2. 신고의무자와의 혼인 당시 병역준비역으로서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사람
3.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거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조의2(신고대상 배우자) 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의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u> <u>1.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병역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쳤거나(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및 의무복무를 마치지 않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사람을 포함한다) 복무 중인 사람</u> <u>2. 신고의무자와의 혼인 당시 병역준비역으로서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사람</u> <u>3.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처분을 받았거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인력정책과	
연 락 처	(02) 748 - 5137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2) 481 - 2677